

한국어의 세계화와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송향근(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한국어 교육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한국어 사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발전의 기저에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주변 환경의 빠른 변화가 있으며, 주요 요인은 크게 국외와 국내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나눌 수 있다.¹⁾ 2008년 현재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명제 아래 국내외적으로 한국어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우선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관한 간략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세계화의 핵심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급증하고 학습자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외 각 교수-학습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 교사²⁾의 적절한 공급이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 교원 수급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없으며, 국외의 경우, 대학, 중등학교 및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내의 경우도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대부분 비전문가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수준 제고를 위해서

1) 조항록(2008:110-114)은 다음과 같이 7가지의 주요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중국의 경제 발전과 외국 유학 분위기의 고조
- ② 중국, 일본, 동남·남·중앙아시아, 중동 등 지역의 한류
- ③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실시와 한국어능력시험의 부과
- ④ 일본 내 한국의 이미지 변화와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
- ⑤ 국내 다문화 사회의 진전과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
- ⑥ 국어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기반의 조성
- ⑦ 스테디 코리아 2005, 세종학당 추진 등 정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의 실시

2) 한국어를 교수하는 교육기관과는 상관없이 한국어를 교수하는 모두 사람을 한국어 교사로 지칭할 수 있으나, 교사란 용어가 갖는 범위 등을 고려하고 현재 국어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규정된 용어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수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한국어 교원이라 지칭한다.

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교원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여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의 한국어 교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인력을 조사·발굴해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어 교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³⁾

2. 한국어 세계화의 과제

198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 증가해온 국외의 한국어 학습 수요는 이후 중국,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 러시아 극동지역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려 왔으나, 유럽, 호주 등 지역에서는 정체 내지 침체를 보이고 있다. 조항록(2008:117-121)은 이러한 현상은 해당 지역의 한국어 사용 요구의 감소만이 아니라 한국어의 효율적인 보급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외 한국어 교육 현장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① 한국어 교육의 지역적 재편
- ② 현장의 다양화 : 학습자 집단 변인의 다양화와 공급자 집단의 다양화
- ③ 사회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급속한 확산
- ④ 한국어 교원의 세대교체 : 1세대와 2세대의 병존 및 2세대의 부재
- ⑤ 교육 방식의 다양화 : 방송의 활용 등
- ⑥ 재외동포 비중의 축소
- ⑦ 역내 협력 및 한국과의 협력의 한계 : 교재 개발 등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국외 한국어 교육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과제로 다음의 8가지를 정리하고 있다.(조항록 2008:122-126)

- ①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의 목표 설정
- ②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신진 교사 충원 과정
- ③ 교육 체제 간의 연계 문제

3)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에 대해서는 송향근(2007)을 요약, 정리하였다.

- ④ 한국어 국외 보급 추진 동력의 문제 : 정부, 기업, 교육기관, 교육자
- ⑤ 부서 간 업무 중복의 문제 : 정부 부서, 산하기관
- ⑥ 잠재적 학습자의 실제적 학습자로의 전환 문제
- ⑦ 재외동포의 긍정적 역할 동원
- ⑧ 한국어와 한국학과의 관계

한국어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중반을 기해 외국인 100만 명에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는 2008년 7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 437,727명, 국제결혼 이주자 102,713명, 국제결혼 가정 자녀 58,007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49%, 11%, 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성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키우는 과제 역시 한국어의 세계화에 있어 주요한 과제가 된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교육 대상의 성격에 따라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과제로 첫째, 분명한 교육 목표의 설정, 둘째, 문화상호주의 관점의 도입 및 교사의 문화상호주의 교육 능력 배양, 셋째, 정부 차원의 다문화 사회 정책 추진 체제 확립 및 부서 간 협조 체제의 구축, 넷째, 한국어 교육계의 전문성 향상 노력, 다섯째, 다양한 교육 방법의 모색, 여섯째, 교육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노력 등을 들 수 있다.(조향록 2008:135-138)

3.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 검토 및 개선 방안

국어기본법 제19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부칙 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2005년에 제정되었고, 2008년 전반기까지 배출된 한국어 교원 자격증 보유자의 총수는 2급과 3급을 포함하여 2,080명이었다. 2008년 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 말까지 배출된 자격증 보유자 가운데 63%는 이미 현직에 종사하고 있고, 향후 교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전체 인원수의 24%로 확인되었다.

한편, 향후 4년간 교원 자격 보유 예상 인원수는 2급 자격 취득 예정자가 1,600명⁴⁾, 3급 자격 취득 예정자가 3,600명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와

4) 이는 학부 과정 7개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10여 개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0여 개 교에서

예상치를 바탕으로 향후 4년(2008년~2011년) 간 한국어 교원의 총 수요(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외 대학, 세종학당만 계산)는 3,067명이고 총 공급은 4,876명이다. 일견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것으로 보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 교육원, 한국어 사설학원 등의 잠재적 수요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9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부칙 2조에 규정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을 검토하고, 그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진단한 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해당 규정에 따라 한국어 교원 양성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한국어 교원의 자질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제시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의 기준이 1) 객관적이고 타당한가, 2)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원 수급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3.1. 현행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

국어기본법 제19조와 이에 의거해 제정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①항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에 의한 재외 동포(이하 “재외 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재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국어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①항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등)

-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매년 400명의 한국어 교육 전공 졸업자가 배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 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교원 1급

한국어 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 교육 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 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한국어 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

3.2. 개선 방안

3.2.1. 자격 부여 기준

<논의 과제 1> 한국어 교육 비전공자에게도 한국어 교육 전공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1) 한국어 교육 전공자에게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복수전공 포함)으로 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부칙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한국어 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문분류표에도 이미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존재하며, 국내에 학부 과정으로 7개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10여개 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으로 20여개 교에 전공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여기서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 수는 약 4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어 교육이 고유한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전공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교육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전공자에게 해당 분야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자격 부여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현 시행령이 일정 자격을 갖춘 비전공자에게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만든 것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충분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자의 배출이 충분한 현 시점에서는 자격 부여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비전공자에게는 ‘한국어 교원’이 아닌 다른 자격을 신설하여 한국어 교육 자격을 부여한다.

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2조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므로 1)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로, 자질을 갖춘 한국어 교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큰 자산이며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공자에게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다른 새로운 자격을 만들어 자격을 부여한 후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제 2>에서 함께 논한다.

<논의 과제 2> 현 시행령의 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한국어 교육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가?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1)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나 (2) 시행령 시행 전에 국내외 대학에서 8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만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제 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현행 시행령에 의거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던 1), 2)에 해당하는 자들은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자가 아니므로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내의 대학 부설 교육기관을 비롯한 여성결혼이민자 교육기관, 이주노동자 교육기관 및 국외의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에서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할 때 일정한 한국어 교육 역량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는 아니나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했거나 체계를 갖춘 신뢰할 만한 교육기관에서 8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한국어 교육의 준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 교육 전공자는 아니나 한국어교육 유관학과나 유관학과가 연계해 만든 협동과정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과목을 공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킨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어교육 전공자는 아니나 일정 수준의 한국어교육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공자에게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그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자격(가칭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만들어 자격을 부여한 후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시행령에서는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했거나 대학에서 8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3급 자격을 부여했으나, ‘한국어 지도사’ 자격 부여의 기준은 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지도사’ 자격은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구분되므로, 현행 시행령의 3급 자격 부여 기준보다는 완화시켜 일정 정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나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1)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거나 (2) 한국어교육 전공자는 아니나 한국어교육 유관학과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

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한 자 중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단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은 시험 문항의 수준을 낮추고 문항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한국어 교육 전공자나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자, 120시간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교육 전공학과가 아닌 유관학과에서, 혹은 유관학과가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전공을 독립 전공으로 설정해 운영하지 않고 교육과정만을 개설해 운영하는 대학이 있으며, 이러한 학과에서 공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킨 자라 하더라도 이들은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아니므로 지금까지는 취득 학점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관학과나 유관학과가 연계해 만든 협동과정에서 공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킨 경우는 주전공의 경우 최소 720시간(45학점), 부전공의 경우 최소 336시간(21학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120시간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합격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한국어 교원’이 아닌 ‘한국어 지도사’로 변경하는 경우,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현행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은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교육 관련 지식과 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폭 넓게 부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제도를 완화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문항의 수준을 낮추고 문항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도 대학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어 교육 경력을 ‘시행령 시행 전 국내외 대학에서 8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을 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경력을 국내외 대학에서의 경력만으로 제한한 것은 체계적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활용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곳에서의 교육 경력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적을 받아 온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은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의 국제교육진흥원이나 외국인학교, 국외의 중고등학교,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한국학교 등에서는 물론 결혼 이주 여성 대상 교육 기관, 이주 노동자 대상 교육 기관, 한글학교 등 다양한 교육의 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의 한국어 교사들은 해당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수법을 익히고 개발하여,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가진 후에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격증은 아니지만, 본인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의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각종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교원들에게 해당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국어 지도사’ 자격(한글학교 한국어 지도사,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지도사, 이주노동자 한국어 지도사, 중국에서의 한국어 지도사 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해당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한 교사의 교육 경력을 인정받고 싶은 기관은 국립국어원에 등록하여 기관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800시간은 한국어 교육자로서 일정한 자질을 갖추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교육 시간이다.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 대상자는 여성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들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주당 교육 시간은 대체로 2~4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같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3년 정도 교육하면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300시간 이상 한국어를 교육한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어 지도사’ 제도의 마련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의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능력을 인정하고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행령 이전의 교육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교육 경력도 모두 인정한다. 단, 최근까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어 지도사’ 자격 발급 신청 시점에서 7년 이내의 교육 경력만을 인정한다.

그런데 교육 경력을 이용해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어 교육 이론을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한국어학이나 한국어 교육학 영역의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3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자들이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섯 개 영역 중 현직 교사에게 유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⁵⁾ 전체 교육 시간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50~60시간이 적절할 것이다.⁶⁾

3)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숙달된 결혼 이주 여성에게 일정 시간 한국어 교수법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결혼 이주 여성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이들의 수도 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숙달된 결혼 이주 여성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에 숙달된 결혼 이주 여성은 자신의 모국어를 활용해 같은 언어권이나 문화권에서 온 후배 결혼 이주 여성에게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으며, 문화 비교적 관점에서 또한 자신의 한국 적응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느 교사보다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숙달된 결혼 이주 여성을 선발하여⁷⁾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한 교육⁸⁾을 실시한 후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해 한국어 교육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의 효율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한국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돕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에게 한국어 학습과 문화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⁹⁾

4) 세종학당의 교원 수급을 위해서 국외 대학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
- 5) [별표 1]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킨 한국어 교육자는 재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6)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먼저 국립국어원이나 국립국어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정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일정 시간의 교육 경력을 갖춘 자에게는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7) 선발의 기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말하기 능력은 별도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 8) 교육과정은 국어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교육 내용 구성과 시간 수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면 될 것이다.
 - 9) <논의 과제 2>의 제안 1)과 2)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함과 같이 제안 3)의 결혼 이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 자질의 상대적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결여를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결혼 이주 여성에게는 ‘한국어 지도사’보다는 한 등급 낮은 ‘한국어 보조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될 수 있다고 본다.

가진 자 중 세종학당 교사로 일하는 자에게는 한시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

세종학당은 2007~2011년에 동남아시아·몽골, 중국, 서남아시아에 100개교, 2012~2016년에 중동아프리카, 북미·유럽·중남미에 100개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에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지의 수준 높은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에서 양성된 양질의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으로 보인다.

세종학당은 교원 중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설립년도부터 3년째까지는 정원의 30% 이상, 6년째까지는 정원의 50% 이상, 9년째까지는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국외 현지에서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재정상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많은 교원을 파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현지의 유능한 교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세종학당의 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원 중에는 오랜 기간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 많다. 따라서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 대학의 역량 있는 한국어 교육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시행령 수정안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들은 한국어학과 관련된 오랜 연구 경력과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의 한국어 교수 요원으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한 ‘한국어 교원’들이 충원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춘 국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자 중 세종학당 교원으로 일하는 자에게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요구되는 적절한 교육 경력은 2,000시간인데, 이는 주당 10시간씩 40주를 교육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5년에 해당하는 교육 시간이다.

3.2.2.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학점

<논의 과제 3>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제13조 제1항 관련)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영역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 규정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에 충분한가?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6>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제13조 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 1])

번호	영역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9학점	9~10 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학부의 경우 45학점을, 대학원의 경우 18학점을 취득하면 되고,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부전공으로 21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이 필수 이수 학점을 5개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어 교원의 자질을 갖추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인 한국어학 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필수 취득 학점 수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 교원의 교육 능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어학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필수 이수 학점이 적은 것은 총 취득 학점 규정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과목의 내용 및 학점 수를 고려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학점 요건에 맞춰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를 총 수로 두고, 이를 영역별로 적절히 배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 별로 이수해야 할 필수 학점 수를 먼저 결정하고 이를 합해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이수 학점 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영역별로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학 영역의 경우 대학에서는 주전공자(복수전공자 포함)는 6학점, 부전공자는 3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전공자는 2과목, 부전공자는 1과목을 취득하면 된다. 한국어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한국어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데 1~2과목의 수강만으로는 한국어학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어학 영역의 이수 학점 수를 최소한 6~9학점으로 늘려, 이수 과목 수를 2~3과목으로라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원의 경우는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과 통합하여 3~4학점(1~2과목)을 필수 이수 학점으로 요구하므로 한국어학 영역은 전혀 듣지 않아도 무방하다. 대학이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과는 달리 대학원은 한국어학 영역과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을 통합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필수 이수 학점을 영역 별로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어학 영역에서의 필수 이수 학점은 3~4학점이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에서는 학부에서 한국어학 영역을 선수 학습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학점 취득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의 경우는 대학이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필수 이수 학점이나 시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 현재 한국어학 영역과 통합되어 있는 것을 구분하여 3~4학점으로 필수 이수 학점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의 경우, 대학의 부전공과 대학원에서의 필수 이수 학점을 변경해야 한다. 대학 주 전공의 필수이수 학점이 24학점인 데 비해 부전공의 필수 이수 학점은 9학점이다. 즉, 대학에서 3과목만 수강하면 부전공을 인정받는 것인데 3과목의 수강으로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 수 없다. 따라서 부전공의 필수 이수 학점을 15학점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원의 경우도 현재의 규정에는 9~10학점으로 되어 있으나 12학점으로 늘려 4~5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한국 문화 영역과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은 대학과 대학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모두 특별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학 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교과목을 늘려 대학에서의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경우 필수 이수 학점을 45학점에서 48학점으로, 부전공의 경우는 21학점에서 30학점으로, 대학원의 경우 18학점을 24학점으로 조정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조정안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조정안

번호	영역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9학점	6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15학점	12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8학점	30학점	24학점	120시간

<논의 과제 4> 현행 시행령에는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승급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승급을 하는 데는 교육 경력 이외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승급 요건으로 어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①항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승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¹⁰⁾

10) 현행 시행령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급 조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정안에서는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다. 제3호 나목(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2급

나. 제3호 가목(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규정에서는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만을 승급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기간 중의 교육 시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보다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사로 인정받아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간 이외에도 교육 시간, 보수 교육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 한국어 교원 자격 승급의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1,200시간의 교육 시간도 함께 요구된다.¹¹⁾ 3년의 교육 경력과 1,200시간의 교육 시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승급 자격이 주어지므로 3년 간 1,0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3급 보유자는 200시간의 교육 시간을 채워야만 승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00시간의 교육 시간도 함께 요구된다.¹²⁾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5년의 교육 경력과 2,000시간의 교육 시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승급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현행 시행령에서는 승급에 필요한 경력으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대학 부설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학뿐만 아니라 공교육 기관(국제교육진흥원, 초·중·고등학교, 한국학교, 세종학당, 문화원, 교육원 등)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기관(한글학교, 인권단체나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 등) 등에서의 교육 경력도 승급의 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11) 1,200시간의 교육 시간은 주당 8~10시간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가 3년 간 교육할 수 있는 시간 수이다.

12) 2,000시간의 교육 시간은 주당 8~10시간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가 5년 간 교육할 수 있는 시간 수이다.

단, 해당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한 교사의 교육 경력을 인정받고 싶은 기관은 국립국어원에 등록하여 기관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승급에 필요한 또 다른 요건은 교사 재교육 과정의 이수다.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교원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전문화된 교사로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보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국어 교육 이론이나 교수법 등으로 구성된 재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승급에 필요한 재교육과정은 [별표 1]의 다섯 개 영역 중 현직 교사에게 유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체 교육 시간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50~60시간이 적절할 것이다.

3.2.3. 자격 부여자

<논의 과제 5> 현재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부의 주체는 문화관광부 장관이다. ‘한국어 교원’과 구별하여 ‘한국어 지도사’ 제도를 마련할 경우 ‘한국어 지도사’ 자격증 교부의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 ③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어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부자를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교부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어 지도사’의 경우는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권위나 전문성 면에서 구별되므로, 국립국어원장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어 교원을 수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는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자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대상자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포함해 한국어 교육자나 한국학 전문가 희망자나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희망자 또는 취업 희망자 등이 주를 이룬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경험을 두루 갖춘 한국어 교육학

전공자라야 이들 학습자가 요구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특히 국내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교사가 다수 필요한 세종학당의 경우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현지의 교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교원을 국내에서 파견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한국에서 단기적으로 파견된 교원보다는 현지 사정에 밝은 교원이 교육 효과 측면에서도 더 나은 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지 대학의 한국어 교원들에게 소정의 재교육 과정을 거친 후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해 세종학당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귀국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늘며 이들을 교육할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비전공자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며, 초·중등학교 교사 중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이나 3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귀국 자녀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효율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과 교육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가진 현직 교사가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넷째, 향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결혼 이주 여성 및 이주 노동자 및 재외동포를 교육할 한국어 교원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경력과 연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마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해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한국어에 숙달된 결혼 이주 여성을 ‘한국어 지도사’ 또는 ‘한국어 보조 지도사’로 훈련시켜 결혼 이주 여성 및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생활의 적응을 돕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돕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정부나 국가 기관이 파견하는 한국어 교원의 경우(파견 교사, 국제협력단, 교육원, 문화원, 한국학교 등)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자격을 제한해,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결론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7), □□2007 세종학당 백서□□.
국립국어원(2007), □□세종학당 설립 기본계획□□.
국립국어원(2007), □□2007년도 한국어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중간보고서□□.
소라미(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 및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주최 ‘국제결혼 이주여성: 쟁점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송향근(2007),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2007-01-62), 국립국어원.
재외동포재단(2007),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조향록(2008), 「한국어의 세계화」, 국어사랑 큰잔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

-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est.go.kr>)
국제교육진흥원(<http://www.ied.go.kr>)
국제한국어교육학회(<http://www.iakle.com>)
노동부(<http://www.molab.go.kr>)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이중언어학회(<http://www.korbiling.org>)
재외동포재단(<http://www.okf.or.kr>)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http://www.korean-edu.net>)
한국국제교류재단(<http://www.kf.or.kr>)
한국국제협력단(<https://www.koica.go.kr>)
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
한국학중앙연구원(<http://www.aks.ac.kr>)